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집

2014. 0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2	제1조 목적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조 시설물의 범위 2	제2조 시설물의 지정 2
	제3조 <삭 제>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7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8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8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11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1	제4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12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12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5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대가 13	
제7조의2 내진성능평가 등 16	제8조의2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15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5	
제8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16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16	
제8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16	제10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17	제5조 하도급의 통보 18
	제10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18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17	제1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18	제6조 진단속정장비 18
		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19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21
	제11조의2 등록사항 변경신고 22	제9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21
		제1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22
제9조의2 결격사유 21	제11조의3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24	제11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8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등 2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의4 등록의 취소 등 24		
제9조의5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28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29	제11조의4 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29	제12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등 30
제9조의7 시정명령 31		
제9조의8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영입양도 등 실시자의 의무 31		제10조의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실시자의 의무 31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34		제10조의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승계 33
제10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34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34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통보 35	제12조 중대한 결함 35	제13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36
제11조의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7	제12조의2 유지관리 실적 37	제14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38
	제12조의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3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38	제12조의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39	제15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40
제12조 비용의 부담 41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42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42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42
제 2 절 안전조치등		
제14조 사용제한 등 43	제14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43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이행 등 44	제15조 중대한 결함 44	
제15조의2 조치결과와 통보 45	제16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의 이행 44	
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45	제16조의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45	제17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45
제16조의2 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47		제1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46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 47	제17조 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47	제19조 구조상 주요부분 47
		제20조 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 등 4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3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49	제18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 49	
제19조 ~ 제24조 <삭 제>		
제 4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50	제 4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6조 정관 51	제22조 출연단체 52	제23조 출연금의 출연요구 52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51	제24조 출연금의 출연요구 52	제24조의2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53
제28조 재원 52		
제29조 사업 53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9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54		
제29조의3 손익금의 처리 54	제24조의3 지도·감독 55	
제30조 지도·감독 55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5		
제32조 민법의 준용 56		
제 5 장 보 칙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56	제2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등 56	
제33조의2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57	제25조의2 사전 통지 57	
	제26조 <삭 제>	
제33조의3 사고원인조사 등 58	제26조의2 피해규모 58	
	제26조의3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58	
제34조 비밀유지 60	제26조의4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5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5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조치·60		
제36조 청문 61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61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61	제27조 <삭 제>	제21조 수수료 62
	제27조의2 업무의 위탁 등 61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64
	제28조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2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64	
제 6 장 벌 칙		
제39조 벌 칙 65		
제39조의2 벌 칙 66		
제40조 벌 칙 66		
제41조·제42조 <삭 제>		
제43조 양벌규정 67		
제44조 과태료 68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70	
부 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 표1	93	별 표1
별 표1의2	94	별 표2
별 표2	95	별 표3
별 표2의2	95	별 표4
별 표2의3	96	별 표5
별 표2의4	96	별 표6
별 표2의5	97	별지 제1호서식
별 표3	97	별지 제2호서식
별 표3의2	98	별지 제3호서식
별 표4	98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13.07.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14.02.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14.02.07]
개정 1995. 1. 5 법률 제492호 개정 1995. 12. 30 법률 제514호 1996. 12. 30 법률 제523호 (건설산업기본법) 1997. 12. 13 법률 제453호 (행정절차법, 행정부처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 1. 29 법률 제5730호 1999. 4. 15 법률 제5969호 2002. 1. 14 법률 제6908호 2003. 5. 29 법률 제6116호 (주요법) 2003. 7. 25 법률 제6341호 2005. 5. 26 법률 제7315호 2006. 3. 24 법률 제7923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3. 21 법률 제8967호 2009. 12. 29 법률 제9849호 2011. 11. 20 법률 제10671호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2013. 3. 23 법률 제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 17 법률 제1928호	개정 1995. 4. 20 대통령령 제14631호 개정 1995. 5. 4 대통령령 제14932호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8호 (행정절차법의 시행령에 따른 관세법시행령의 개정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 (공공주택관리령) 1999. 2. 1 대통령령 제16994호 (인원국세공정공사법시행령) 1999. 6. 8 대통령령 제16300호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한국항공공사법시행령) 2002. 9. 6 대통령령 제17728호 2003. 10. 24 대통령령 제18112호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규약법시행령)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7호 (한민공사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0호 (부산교통공단법 시행령 개정령) 2006. 2. 2 대통령령 제18941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6호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906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20호 2010. 9. 8 대통령령 제22971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299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1. 1 대통령령 제236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령에 따른 규제 제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중대법 제정 등 일부개정령) 2014. 1. 17 대통령령 제23987호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0호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8.9.18>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램프·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의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등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시설물 지정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상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와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법	시행령	시행규칙
<p>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p> <p>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p> <p>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p> <p>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p>	<p>고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정정보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p> <p>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p> <p>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p>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p> <p>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p> <p>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p> <p>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p> <p>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p> <p>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p>	<p>제3조 삭제</p>	

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8.9.18]</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09.12.29] <개정 2013.3.23></p>	
<p>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8.9.18]</p> <p>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p>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p> <p>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p> <p><개정 2009.12.29></p> <p>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p> <p>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p> <p>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p> <p>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p> <p>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p>	<p>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2013.3.23></p> <p>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p> <p>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p>	<p>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p> <p>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p> <p>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9.12.29]</p>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삭제</p> <p>② 별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속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속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11.16></p> <p>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3.21]</p>		
<p>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p> <p>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9.8, 2011.11.16, 2013.3.23</p> <p>1. 다음 각 목의 교량</p> <p>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p> <p>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교·아치교인 교량</p> <p>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p> <p>3. 갑문시설</p> <p>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p> <p>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p> <p>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 (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p> <p>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p> <p>8. 방조제(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p> <p>9. 다기능 보(보, 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9.18]</p>	
<p>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p>	<p>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p>	<p>제10조의3(하도급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18]</p>	
<p>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p>	<p>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하도급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제6조(진단측정장비) 영 제11조와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량 및 터널, 수리(水理),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16></p> <p>1. 법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위반되는 경우</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상 및 등록증 발급대상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p> <p>⑤ 정부조달청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p>	
<p>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p> <p>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회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4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상 및

법	시행령	시행규칙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8.3.21]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록증 발급대상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에만 첨부한다)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상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이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별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별 제9조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일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11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9조의4제1항제6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견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p>[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p> <p>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p> <p>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8.3.21]</p> <p>제9조의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p>		<p>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19,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p> <p>⑤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29></p> <p>[본조신설 1999.1.29] [제목개정 2008.3.21]</p>	<p>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p> <p>2.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 위반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p> <p>[전문개정 2008.9.1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8.9.18>]</p>	<p>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① 법 제9조의6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당시에 이미 확보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②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여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p>		<p>제11조의4(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p> <p>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기준을 갖추었는</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p> <p>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p> <p>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기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장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던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1.11.18]</p> <p>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나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병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p> <p>[본조신설 2011.11.18]</p>
<p>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p>	<p>제11조의5(안전등급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명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08.3.21]</p>
<p>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p>	<p>제12조(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3.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29]</p>	<p>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p> <p>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p>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p>② 관리주체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p>	<p>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p>	<p>제12조의2(유지관리 실적)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1]</p> <p>제11조의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p>	<p>1.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9.18] [중개정 2012.2.29] 제12조의4로 이동 <2008.9.18></p> <p>제12조의3(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18]</p>	<p>제14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p> <p>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본조신설 2002.1.14] [재도개정 2008.3.21]</p>	<p>제12조의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주요부제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가를 의뢰하는 경우</p> <p>4.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p> <p>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개정 2013.3.23></p> <p>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p> <p>2.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p> <p>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6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항</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등,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8.9.18]</p> <p>[제12조의2에서 이동 <2008.9.18>]</p>	<p>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p> <p>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p> <p>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p> <p>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p> <p>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p> <p>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평가에 관한 사항</p> <p>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8.9.18]</p> <p>제2절 안전조치 등 <개정 2009.12.29></p>	<p>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2.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p> <p>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p> <p>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p> <p>5.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p> <p>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p>
<p>제14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p>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에 따라 2중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의 이행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	제15조(중대한 결함)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와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9.8, 2013.3.23> [전문개정 2008.9.18]	제1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16> [본조신설 2003.7.25] [제목개정 2013.7.16]	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8.9.18]	
제15조의2(조치결과 등의 통보) ①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17조(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삭제 2013.7.16>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3.21]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③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에도		제17조(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 [전문개정 2008.9.18]
		제19조(구조상 주요부분)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량의 교좌장치 2. 터널의 복공부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불구하고 국방이나 그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p> <p>④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p> <p>⑤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3.7.16></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p>		<p>3. 하천제방의 수문문비</p> <p>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p> <p>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p> <p>6. 상수도 관로이음부</p> <p>7.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16></p> <p>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09.12.29></p> <p>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p> <p>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p>	<p>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p>	<p>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와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절차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7></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18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p> <p>③ 삭제</p> <p>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12.29></p> <p>⑤ 삭제</p> <p>⑥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p> <p>[제목개정 2009.12.29]</p> <p>제19조 삭제</p> <p>제20조 삭제</p> <p>제21조 삭제</p> <p>제22조 삭제</p> <p>제23조 삭제</p> <p>제24조 삭제</p> <p>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2.1.14, 2008.3.21, 2009.12.29></p> <p>제2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p>	<p>제19조 삭제</p> <p>제20조 삭제</p> <p>제21조 삭제</p> <p>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p> <p>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2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p> <p>2.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전문개정 2009.12.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8조(재원) ① 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p>②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22조(출연 단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p> <p>제23조(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그 밖의 용역 수행에 의한 수익금 <p>[전문개정 2008.9.18]</p> <p>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논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표 및 추정손익 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9.18]</p>	<p>제24조의2(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p> <p>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p> <p>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 	<p>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9.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의 적립</p> <p>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 의 적립</p> <p>4. 국고에의 납입</p> <p>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조신설 2008.3.21]</p> <p>제30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용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제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p> <p>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24조의3(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p> <p>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5장 보칙 <개정 2008.9.18></p> <p>제2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3.3.23></p> <p>③ 삭제 [본조신설 2002.1.14] [제목개정 2008.3.21]</p> <p>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26조 <삭 제></p> <p>제26조의2(피해 규모)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설물 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피해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 <p>[본조신설 2008.9.18]</p> <p>제26조의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3조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6></p> <p>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3조의2(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p>	<p>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p> <p>제25조의2(사전 통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점검대상 시설물, 점검 사유, 점검 항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⑤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 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6조의2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p>[본조신설 2008.9.18]</p> <p>제26조의4(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013.7.16></p> <p>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p> <p>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p> <p>⑧ 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p> <p>[본조신설 2008.3.21]</p> <p>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관리되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12.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p> <p>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p> <p>4.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1></p> <p>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1></p> <p>⑤ 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p>		<p>제21조(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러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8조(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6조(정문) 시·도지사는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9.12.29]</p> <p>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p> <p>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p> <p>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p>		<p>제27조 삭제</p> <p>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공단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8.9.18]</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p> <p>[전문개정 2002.1.14]</p>	<p>운영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p> <p>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p> <p>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p> <p>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6장 벌칙 <개정 2009.12.29></p>	<p>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18]</p> <p>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0조 및 별표 2의4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3.12.30]</p>	<p>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축적장: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3.12.30]</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12.29]</p> <p>제39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4. 제9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5. 제17조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09.12.29]</p> <p>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p> <p>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2013.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5.19, 2013.3.23,</p>	<p>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부터</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013.7.16> [전문개정 2009.12.29]</p>	<p>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p> <p>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 중 시도(市道) 및 군도(郡道)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제외한다) <p>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4></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법을 제4922호, 1995.1.5></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동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631호, 1995. 4.20></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는 제7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p> <p>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p> <p>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p>	<p>부칙 <제54호, 2008. 9.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책임기술자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78호, 2010. 8.31></p> <p>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5호, 2010.12.20></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부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 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5433호, 1997. 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p> <p>⑤생략</p>	<p>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부소 소제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0조의 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p> <p><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p> <p>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p> <p>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p>	<p>부칙 <제14933호, 1996. 5. 4></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 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보존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p>	<p>(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부칙 <제350호, 2011. 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03호, 2011.11.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및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p> <p>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p> <p>부칙 <법을 제5141호, 1995.12.30></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094호, 1999. 2.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법을 제5230호,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p>	<p>부칙 <제16069호, 1998.12.31> (공동주택관리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대료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p>	<p>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69>부터 <126>까지 생략</p> <p>부칙 <제5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1호, 2014.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p> <p>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p> <p>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p> <p>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⑦내지 ⑩생략</p> <p>부칙 <제16390호, 1999. 6. 8></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p> <p>부칙 <제17538호, 2002. 3. 2></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내지 ⑬생략</p> <p>제4조 생략</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법률 제5730호, 1999.1.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법률 제5969호, 1999.4.15></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p>	<p>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내지 <54>생략</p> <p>부칙 <제18147호, 2003.11.29> (향만공사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향만공사법에 의한 향만공사 ④내지 ⑩생략</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⑤ 내지 ⑧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728호, 2002. 9. 6></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18111호, 2003.10.24></p> <p>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법률 제6608호, 2002.1.1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p>	<p>부칙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내지 <19>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p> <p>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19206호, 2005.12.28> (부산교통공단 법시행령 폐지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⑩내지 ⑫생략</p> <p>부칙 <제19314호, 2006. 2. 2></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본다.</p> <p>③(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그 완공 후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p> <p><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p> <p><25> 내지 <47>생략</p> <p>제13조 생략</p>	<p>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부칙 <제19513호, 2006. 6.12> (교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p> <p><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교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146>내지 <241>생략</p> <p>부칙 <제19716호, 2006.10.26></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이 되는 시설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완공후 9년이 지난 시설물은 법 제7조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법률 제6941호, 2003.7.2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p> <p>부칙 <법률 제7515호, 2005.5.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법률 제7923호, 2006.3.2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0506호, 2007.12.31> (전자직 업무 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722호, 2008. 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p> <p><7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p> <p><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의2제2항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76> 부터 <138> 까지 생략</p> <p>부칙 <제21020호, 2008. 9.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이 영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문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종합분야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으로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이 변경 또는 미달된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59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을 제8967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호,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하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부칙 <제22371호, 201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법을 제9849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을 제10671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관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거나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법률 제10719호,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23299호, 2011.11.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갈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6>까지 생략</p> <p><60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3호,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4조제5항,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4제1항제11호·제1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 제10조의2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9조제9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8제1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1항제9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3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터 적용한다.</p> <p>제3조(정밀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p> <p>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p> <p>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p> <p>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608>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928호, 2013.7.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의 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p> <p><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57>부터 <146>까지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087호, 2014.1.14></p> <p>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139호, 2014.2.5>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 중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서식

[별표 1] <개정 2008.9.18, 2010.9.8><개정 2011.11.16>
1층시설물 및 2층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층시설물	2층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원주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터널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방한가압시설 나. 계	· 감문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4

[별표 1의2] <신설 2008.9.18, 개정 2010.9.8, 2011.11.16, 2013.3.2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은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층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승행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뱃돌을 시 마다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중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유시설	시·원유부이(BUOY)의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화석연료유관을 포함한다.) · 방류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은 제외한다.)	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용 발전용댐 홍수저용댐 및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홍수저용댐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원용댐 및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의 홍수저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공주택 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공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다. 제방 라. 보	· 하구둑 1천포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문문(閘門)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 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문문 ·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문문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 상하수도 · 방류용수도 1천 포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3

[별표 2의2] <신설 2002.9.6, 2006.2.2>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8조의2관련)

시설물별	주요부분	책임기간
1. 교량	·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연면적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한다.
2. 터널	·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3. 항만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4. 댐	· 본체 및 여수로부분	· 본체 및 여수로부분
5. 건축물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공측악시설·관람객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벽	·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공측악시설·관람객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벽
6.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95

호수·호수 및 철도 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폭이 100미터 이상인 호수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철도부설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철도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을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배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할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배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할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 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홍수저용댐과 지방상수도원용댐이 위 표 제7호각목의 1층시설물 중 방류용수도, 방류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위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한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로 계산한다. 다만, 2층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수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한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각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한다. 13. 안전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할 것으로 한다. 14. "방류용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된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5. "방조제"란 "공용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신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6. 항만의 "중심"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밖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동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밖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7.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수위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8.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방류용수도, 방류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위저시설, 도수관로, 홍수저용(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의3] <개정 2008.9.18>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속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제9조제2항 관련)

자격요건
전기·기계·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별표 2의4] <신설 2008.9.18, 개정 2010.9.8><개정 2011.11.1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종류	적부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급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원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급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철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3. 종합 분야	토목·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 제8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운백 및 철도사원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별표 3의2]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계속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4] <개정 2008.9.18, 개정 2011.4.4, 2011.11.16, 2014.11.1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정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00만원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00만원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법 제44조제1	

[별표 2의5] <신설 2008.9.18>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제10조3제4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시험,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 탄소를 용액에 의한 탄산화 및 이 측정시험, 열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합 또는 상층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케이싱탐색, 시추 또는 유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압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래피탐사, 물리검출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수층격·수문 조사	
6. 계속 및 분석: 시설물 주변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기동 등의 계속(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속 데이터의 분석, 계속시설에 대한 조사·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공,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진위추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재배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 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어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 포함)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3. 토양부식환경 조사·시험	

[별표 3] <개정 2008.9.18, 2013.3.2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등록 요건			건축 분야	종합 분야
	포함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자본금	1억	1억	1억	1억	4억
가. 다음의 기술인력(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 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 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 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장정 장비				

비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 않은 경우	항	기간	금액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	만원 (4지연개월 -12)×100만원 단,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	만원
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	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일금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하여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	만원
사. 법 제9조제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	만원
아.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	만원
자.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	만원
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	만원
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	만원
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	만원
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	법 제44조제2	1차 위반: 300만원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th>항제2호 <th>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th> </th>	항제2호 <th>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th>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가. 법 제15조제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100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
라.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행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
마.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
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
사.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 별지서식

[별표 1]

진단측정장비(제6조 관련)

- 공통
 - 가. 비디오키메라
 - 나. 균일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브트착형)
 - 다.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 라. 초음파측정기(초음파전달시간 0.1μs 분해가능)
 - 마. 철근탐사장비
 - 바.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
 - 사. 염분측정장비
 - 아. 크리어계기
 - 자.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 0.1mm 이하)
 - 차.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 카. 강제비파괴시험장비
 - 1) 자분탐상기(MT)
 - 2) 초음파시험기(UT)
- 교량 및 터널분야
 - 가. 정적 및 동적변형측정장치
 - 나.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 0.01mm 이상)
- 수리분야
 - 가. 유동가스탐지기
 - 나. 관로누수탐지기
 - 다. 금속관탐지기
- 항만분야
 - 가. 유속계(0.1m/sec³m/sec)
- 건축분야
 - 가. 진동측정기
 - 나. 정적변형측정기
- 종합분야는 위 각호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2]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9조 관련)

등록 분야	직무분야	기술자격 등급 및 인정종목	
		기술사	기사 · 산업기사
교량 및 터널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항만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축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
수리시설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비고: 위 표에서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에서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5]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3조 관련)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형질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교각의 균열 발생
2. 터널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물이 흘러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5. 상수도	-수문의 작동불량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6. 건축물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설로 인한 내력 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항만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갑문 충·배수 아키텍처시설의 부식 노후화 -관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안벽의 범선변위 및 침하

[별표 3]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제9조 관련)

분야	관련학과
토목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농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토목교육과 해양토목과
건축	건축학과
	건축공학교육과

비고: 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개정 2013.3.2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 관련)

해당법조문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명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5호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6호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졸원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차정지 후 30일내 미회보시)	등록취소 (2차정지 후 30일내 미회보시)
법 제9조의4 제1항 제9호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0호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2호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점검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정고일 부터 6개월 이내)
법 제9조의4 제1항 제13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4호	소속 임직원은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 제9조의4 제1항 제15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6]<개정 2014.2.7>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할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감리보고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시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일 후 3개월 이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일람범위 및철차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지정 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②전 화 번 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⑥시설물명		⑦종 별	
⑧시설물의 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1부(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 통보		
① 시설물명(시설물번호)		
② 시설물 소재지		
수급인	③ 상호 및 대표자	
	④ 사무소 소재지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⑧ 분 야	
	⑨ 기 간	
	⑩ 하도급 액수	천원
	⑪ 주요과업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관리주체 귀하		
※ 첨부서류: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18>

안전진단전문기관 [] 신규 등록신청서		
[] 재발급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1. 대표자 및 임원의 평단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수수료 없음

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함)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증자신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함) 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기술등급 및 자격증 번호	자격유효기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비고
1. 기술종목: 토목 · 건축 등 기계						
2.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학력 · 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교육 등 이수내용 기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별지 제5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기간	구입 및 폐기 연월일	보관장소	비고
1. 구분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 기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18>

등록종 재 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등록 분야	
5. 등록 연월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 ²]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상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관련 면허 업종	제 호	결업사항	
차분금			
납입자분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분금	
기계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 ²]]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상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 발급
						일자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m ²]]						

(제3쪽)

*** 기재요령**(모두 한글로 적습니다)

- "①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 "②일체명"란에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상호를 적습니다.
- "③업제구분"란에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기관"으로 적습니다.
- "④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 "⑤공통수급"란에는 공통수급으로서 공통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고, "⑦시설물명"란에는 분담시설 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 "⑥폐약방법"란에는 일반정장·제한정장·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 "⑦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상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 "⑧시설물 구분"란에는 다음 중에서 택일하여 적습니다.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 "⑨종류"란에는 다음 중에서 택일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고속철도역사·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터널·도시철도교차로·도시철도터널·도시철도역사·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갑문시설·계류시설·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홍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공주택·공공주택의건축물·문화및복지시설·판매및영업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하구둑·수문·제방및부속시설·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폐기물매립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홍백·철도사면·기타
- "⑩종별"란에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1종인 경우에는 "1", 2종인 경우에는 "2",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⑪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 "⑫폐약"란에는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정밀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기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 "⑬안전점검"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⑭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변경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제4쪽)

15. "⑬시설물의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교량: 연장()m, 최대경간장()m, 차로수()
- 터널: 연장()m, 차로수()
- 지하차도: 연장()m, 차로수()
- 갑문시설: 최대용파선박규모()톤
- 계류시설: 최대계류선박규모()톤
- 댐: 저수용량()천만톤
- 건축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 지하도상가: 지하()층, 연면적()㎡
- 하구둑: 연장()m, 높이()m
- 수문: 가로()m, 세로()m
- 상수도: 공급능력()만m³/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처리용량()m³/일
- 복개구조물: 연장()m, 가로()m, 세로()m
- 매립시설: 매립면적()㎡
- 홍백: 최대높이()m, 연장()m
- 철도사면: 최대면적높이()m, 단일수평연장()m

16. "⑭점검·진단 금액(천원)"란에는 해당시설물별 점검·진단의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17. "⑮구분"란에는 보수보강, 철거,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적습니다.

18. "⑯기술등급"란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19. "⑰참여기술자"란에는 영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사람을 적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1.18>

중공·사용승인 통보서

기관명	전화번호
통보인 담당자	
시설물명	관리주체명
시설물분류	
주소	
중공 또는 사용승인일	
시공자명	발주자명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통보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2급) 70g/㎡]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1.11.18>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양수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업 제 명	대 표 자	
소 제 지	(전화:)	
등 록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 적 확 인 내용	분야 (점검·진단)	
	시설물 구분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용 도
	기 간 ~	부 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02.9.10>

우원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발급번호제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실적확인내용	분야 (점검·진단)	시설물 구분	
	기간 ~	용도	
연번 (시설물명)	용역명	종류	종별
	관리주체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기간
1			책임기술자
2			출자비율(분담내용)
3			
이하야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1.11.18>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합병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